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64회 임시회(2023, 10, 17.)

2023년 제2회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

검토보고서

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

2023년 제2회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

검토보고

의안 번호 23-135

1. 제출경위

가.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(도시환경국)

나. 제 출 일 : 2023. 9. 26.

다. 회 부 일 : 2023. 10. 6.

2. 추가경정예산안 총괄

가. 세입예산

(단위:천원)

| 구 분 | 예 산 액 | 기 정 액 | 증 감 | 증감률 |
|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|-----|
| 총 계 | 19,845,083 | 19,845,083 | 0 | 0 % |
| 일반회계 | 16,302,045 | 16,302,045 | 0 | 0 % |
| 특별회계 | 3,543,038 | 3,543,038 | 0 | 0 % |

나. 세출예산

(단위:천원)

| | 구 분 | 예 산 액 | 기 정 액 | 증감 | 증감률 |
|----|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
| 일변 | ·호기 | 81,561,880 | 77,048,577 | 4,513,303 | 5.85 % |
| | 인건비 | 13,616,612 | 13,616,612 | 0 | 0 % |
| | 물건비 | 7,525,186 | 7,525,186 | 10,000 | 0.13 % |
| | 경상이전 | 47,504,483 | 43,004,483 | 4,500,000 | 10.46 % |
| | 자본지출 | 11,609,603 | 11,609,603 | 0 | 0 % |
| | 예비비및기타 | 1,305,996 | 1,305,996 | 3,303 | 0.25 % |

3.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조직별 현황

가. 일반회계 (단위:천원)

| | 구 분 | 예 산 액 | 기 정 액 | 비교증감 | 증감률 |
|---|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
| 3 | · 계 | 81,561,880 | 77,048,577 | 4,513,303 | 5.86 % |
| | 주택상생과 | 2,405,988 | 2,395,853 | 10,135 | 0.42 % |
| | 자원순환과 | 60,097,378 | 55,597,378 | 4,500,000 | 8.09 % |
| | 도시계획과 | 1,973,820 | 1,973,820 | 0 | 0 % |
| | 건축지원과 | 419,494 | 419,494 | 0 | 0 % |
| | 맑은환경과 | 2,211,127 | 2,211,127 | 0 | 0 % |
| | 공원녹지과 | 14,454,073 | 14,450,905 | 3,168 | 0.02 % |

나. 특별회계 : 해당사항 없음

4.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업별 증감 현황

가. 일반회계(중·감액 및 신규사업)

(단위:천원)

| | 부서・편성목 | 예산액 | 기정액 | 비교증감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
| ス |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사업 | 568,653 | 558,653 | 10,000 |
| 주 택 | 일반운영비 | 25,440 | 15,440 | 10,000 |
| 상 | 사무관리비 | 25,440 | 15,440 | 10,000 |
| 상 생 과 | 1)공동주택 관리운영 실태조사 | 10,000 | 0 | 10,000 |
| 4 | 2)관리실태 감사 전문가 수당 | 10,000 | 0 | 10,000 |
| 자 | 폐기물 처리 | 37,871,711 | 33,371,711 | 4,500,000 |
| 원순환과 | 민간이전 | 11,980,522 | 7,480,522 | 4,500,000 |
| | 민간위탁금 | 11,980,522 | 7,480,522 | 4,500,000 |
| 과 | 1)홍대관광특구 특별권역 종합관리 위탁 | 4,500,000 | 0 | 4,500,000 |

나. 국비 및 시·도비 반환금

(단위:천원)

| | 세부사업 · 편성목 | 예산액 | 기정액 | 비교증감 |
|-----------|--|--------|--------|-------|
| 주태 | 반환금기타 | 3,362 | 3,227 | 135 |
| 주·택·상·생·과 | 시 · 도비보조금반환금 | 3,362 | 3,227 | 135 |
| 화 | 1)2022년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사업 | 135 | 0 | 135 |
| | 반환금기타 | 44,832 | 41,664 | 3,168 |
| | 국고보조금반환금 | 18,033 | 16,101 | 1,932 |
| | 1)2021년 생활밀착형 숲 조성 집행잔액 및 이자(추가) | 300 | 0 | 300 |
| 고 | 1)2021년 산림재해일자리(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) 경상보조 | 1,565 | 0 | 1,565 |
| 공위사 | 1)2021년 산림재해일자리(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) 자본보조 | 67 | 0 | 67 |
| 녹 | 시 · 도비보조금반환금 | 26,799 | 25,563 | 1,236 |
| 지 과 | 1)2022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비 보상 집행잔액 및 이자(추가) | 670 | 0 | 670 |
| 과 | 1)2021년 산림재해일자리(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)경상보조 | 472 | 0 | 472 |
| | 1)2021년 산림재해일자리(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)자본보조 | 20 | 0 | 20 |
| | 1)2022년 생태계 교란 생물 관리 집행잔액 | 21 | 0 | 21 |
| | 1)2022년 생태계 교란 생물 관리 이자 | 53 | 0 | 53 |

5. 검토결과

가. 예산규모

- 2023년도 제2회 도시환경국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음.
-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70억4,857만7천원에서 5.86%, 45억1,330만3 천원 증액된 815억6.188만원임.

나. 부서별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역

- 주택상생과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23억9,585만3천원에서 0.42%, 1,013만
 5천원 증액된 24억598만8천원으로,
 - 공동주택 관리운영 실태조사 전문가 수당으로 1,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,
 - 2022년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시·도비보조금 반환금 13만5천원 증액 편성되었음.
- 자원순환과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555억9,737만8천원에서 8.09%, 45억원 증액된 600억9.737만8천원으로.
 - 홍대관광특구 특별권역 종합관리 위탁금으로 45억 원 증액 편성되었음.
-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144억5,090만5천원에서 0.02%, 316
 만8천원 증액된 144억5,407만3천원으로,
- 편성내역은 국·시비 보조금 반환금 편성으로,

| - 2021년 | 생활밀착형 숲 조성 집행잔액 및 이자(국고보조금) | 300천원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- 2021년 | 산림재해일자리(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) 경상보조(국고보조금) | 1,565천원 |
| - 2021년 | 산림재해일자리(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) 자본보조(국고보조금) | 67천원 |
| - 2022년 |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비 보상(A·도비보조금) | 670천원 |
| - 2021년 | 산림재해일자리(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)경상보조(시·도비보조금) | 472천원 |
| - 2021년 | 산림재해일자리(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)자본보조(시·도비보조금) | 20천원 |

- 2022년 생태계 교란 생물 관리 집행잔액(A·도비보조금)

21처워

- 2022년 생태계 교란 생물 관리 이자 (A·도비보조금)

이 증액 편성되었음.

53천원

6. 검토의견

- 2023년도 제2회 도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은 주택상생과 '공동주택 관리운영 실태조사 사업'과 자원순환과의 신규사업인 '홍 대관광특구 특별권역 종합관리 위탁 사업'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, 기타 지난 국·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으로 증액 편성함.
- '공동주택 관리운영 실태조사 사업'은 공동주택 관리의 부조리 등을 적 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통한 감사를 실시하여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는 사업으로서, 상·하반기 정기 실태조사 이 외에 공동주택 입주민 민원에 따른 수시 감사요청이 빈번히 발생하여 추 가적으로 실시할 특별감사에 전문가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1,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임.
- 장기간 반복적으로 다수인에게 민원이 제기된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본사업의 증액 편성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, 공동주택관리실태를 외부인에게 점검 받게하는 것은 점검내용의 신뢰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등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존 공동주택 감사실적 및 반복민원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사후 벌칙성 감사보다는 사전 예방적 공동주택관리 컨설팅 및 교육이 필요해 보임.
- 아울러, 연간계획을 철저히 하여 추경의 예측불가능성에 수렴할 수 있도
 록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야 하겠음.
- '홍대관광특구 특별권역 종합관리 위탁 사업'은 홍대관광특구 조성에 따

라 청소분야 개선대책 차원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상시 수거체계로 운영하고자 45억 원을 신규 편성한 것임.

○ 본 사업의 증액 편성 목적은 홍대 Red Road의 세계적 명소로의 도약을 위한 도시미관 저해 및 방문자 불편사항 발생에 대한 환경개선 대책 일환으로 서교동, 동교동, 합정동 일부지역과 홍대 관광특구지역의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업체 권역을 개편 〈표 1.〉하여 소형 상가가 밀집한 홍대관광특구 내 생활쓰레기 수거체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임.

구 분 현 행 조 정 (안) 1권역(평화) 공덕, 도화, 舊 서교 공덕, 도화, 용강 성산2, 상암, **서강**, **합정** 2권역(대경) 성산2, 상암, **서강, 합정** 대흥, 신수, 舊 동교, 연남 대흥, 신수, 연남 3권역(효성) 4권역(케이제이로지스) 아현, **용강**, 염리, 망원1·2, 성산1 아현, 염리, 망원1·2, 성산1 서교(舊서교·동교), 서강·합정 일부 5권역(홍대특별권역)

<표 1. 대행업체 권역변경(안) >

- 또한 기존 수거체계를 상시 수거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을 기존 일 1회에서 일 3회로 늘리고 배출요일을 상시로 하는 〈표 2〉 방식으로 전환하여 기존에 지적되던 홍대지역 생활폐기물 미수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수거체제 개선 방식은 도시미관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됨.
- 다만, 특정 구역에 대해서만 수거체계를 변경하는 것은 주민 모두에게 공공 서비스 및 혜택이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하는 행정편익의 형평성 원칙에 위 배되는 것으로 판단됨.
- 따라서, 향후에는 마포구 전체 생활폐기물 수거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로

지역별 공평한 방식과 혜택을 주민에게 보장하고 생활폐기물을 처리 중심이 아닌 효과적인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주민들에게 폐기물 처리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는 교육과 정보 공유가 필요해 보임.

구 분 배출요일 배출시간 수거시간 변 경 전 일, 월, 화, 수, 목요 (금, 토요일 제외) 18:00~24:00(하계) 19:00~24:00(동계) 22:00~06:00

07:00~15:00(주간)

22:00~06:00(야간)

일요일 ~ 토요일

(상시수거)

변경후

<표 2.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(상시 수거체계 운영)>

아울러, 「지방재정법」제45조에 따르면 "확정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법률상 요건 외 일반적인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했을 때 추경안의 편성요건은 목적 적합성, 예측불가능성, 보충성, 시급성, 연내집행가능성 등이 요구되어짐.

12:00~15:00

19:00~24:00

- 하지만,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더라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어긋나고 「지방재정법」제50조제1항에 따라 명시이월이 발생할 것이 분명함.
-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경비의 성질이란 사업이 상당 기간 소요되어 연도 내 지출을 못한다든지 특수한 사정으로 사업 집 행시기가 늦어져 지출을 완결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데,
- 예산을 편성하기도 전에 명시이월을 승인해야 하는 상황은 예산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예산 관리가 복잡해져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아니며, 의회 의결권을 저해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임.
- 또한, 대행계약의 연내 불성립 등을 고려하여 심사시 충분한 논의를 통해

「지방재정법」의 제정 취지에 어긋나지 않고 예산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논의해야 하겠음.

○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
| 전문위원 | 신 준 호 |
|------|-------|
| 주무관 | 박 철 호 |

[관계법령]

「지방자치법」

제145조(추가경정예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 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

「지방재정법」

제45조(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(追加更正豫算)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
- 1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
- 2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·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